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비 출연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7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

•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10. 1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문종명 배터리첨단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2027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

❍ 2027년 본예산 출연액 : 103.5억원

- 제6벤처동 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지원

다. 관계법령

❍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, 제17조, 제19조

❍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❍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 : 의회 사전의결

❍ 「포항시 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3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본 출연안은 글로벌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㈜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입주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융합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(재)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검토결과, 제6벤처동 건립은 포항테크노파크의 입주공간 부족에 대응하고 지멘스 헬시니어스㈜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, 창업·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다만, 출연금은 위탁금이나 보조금과 같이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만큼,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출연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